

의무기록사업무의 법률적 의미와 안전한 의무기록관리방안

변호사 법학박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Shin & Partners

| 부설 | 의료법률정보센터

www.medcon.co.kr



1. 의무기록작성의 목적과 위반시처벌

가. 목적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56 판결

(1) 주치의 메모

(2) 다른 의료인들의 환자에 대한 치료자료

(3) 사후 적정진료확인자료



나. 의료인의 성실기재 의무

(1) 위반시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의료법 제69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불이익

- 기록되지 않은 것은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부실기재는 부실치료를 추정 등
 - : 일본 미야자키법원
- 위변조, 은닉, 제출거부시
 - : 입증방해로 무과실입증부담

성명 [redacted] F
 주민등록번호 [redacted]
 병동 호 침상
 년월일

경과기록

1. 자세한 경과(특수검진, 처치, 수술, 진과 등의 사항 포함)를 기록할 것.
2. 서명은 정확히,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00 원	월일	서명	
6	3	at 2:05 PM. ICU 에서 음향 call 시행함. ICU 단상당시 monitor 상 PR: 60 bpm BP 130/80 mmHg sat 60% 정맥 유지되고 있는 소견 있음. nurse 고장이 잘못된 것 같아 재시도 시행하며 ambu bagging 시행함. Cyanosis develop 됨. 청진상 lung sound 들리지 않아 tube 확인함. extubation status 확인하여 다음 연구 intubation 시행하기로 함. at 2:12 PM Dr M.D. intubation 시행함. intubation 당시 monitoring 상 PR: 40 bpm BP 160/80 ~ 80/40 mmHg sat 40% 있음.	K7
6	3	이후 Sat 97% 로 회복됨.	
6	3	at 2:30 PM. 현재 sedation 되어 있는 상태로 neurologic exam 시행 못함. 음향 이상까지 communicate 잘 되는 상태였으나, 현재 communicate 하지 않음. 현재 상태 양상 연구 brain CT 촬영 여부 결정함 예정임	서



6/3

환자 계속 졸리다고 drowsy 한 듯한 말임
 NH3 Flu 하렸을 때 36으로 normal range

* **신경과 consultation 시의방함**

Drowsy mental status 이나 현재
 definite 인 brain damage 는 의심되지 않고,
 필요시 (vital stable 하진 경우) hemorrhage K/O
 하기위해 Brain CT 를 촬영해 볼수 있는 것임

* **GI consultation 시의방함**

일단 vital sign 유지하고, FFP, packed RBC,
 특히하면서 conservative 하게 management
 하기론 함.

Underlying fatty liver 상태라 Antithrombin III
 특히하 하기론 함.

* **Nephro consultation**

환자 third space loss 심한 상태라 일단
 hydration (total 50g) 정도 시의하하면서
 lastx intermittent ~~low~~ **low** ~~to~~ **to** ~~the~~ **the** ~~colloid~~
 등 volume expander (Albumine, pentaspan, FFP)
 등 사용 하기론 함.

* **Pulmo consultation 시의방함**

ABGA 상 PH 7.3, PaO2: 57.9 O2 sat 85.8%
 는 CXR 상에서 mild haziness, edema seen
 하여 intubation 가능함 있음은 하겠음
 ICU 로 옮겨 CXR Flu 하고 하겠음 함





다. 의무기록사의 기록점검의무

- 동의서 점검

(1)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 환자의 자기결정권보장, 민법 제683조

(2) 연혁

: 환자의 입증책임경감을 통한 권리구제

(3)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주체의 변경

: 의사 → 환자



(4) 설명의무의 위법성 조각사유

(가) 정당행위(형법 20조)

(나) 정당방위(형법 21조)

(다) 긴급피난(형법 22조)

(라) 자구행위(형법 23조)

(마) 피해자승낙(형법 24조)

(5) 잘못 작성된 동의서

등록 번호	환자 분류	수술 검사 마취	신 청 서
성명	성별	병명	_____
주민 번호	생년 월일	수술/검사명	_____
과		주치의사	_____


본인은 본인(또는 상기 환자)에게 행하여질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듣고 본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로써 합병증 또는 환자의 기왕력이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야기 될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를 받고자 모든 것을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위임하고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과정이나 후에 일어나는 의학적 사태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책임을 병원 당국에 묻지 않을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하여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를 신청합니다.

- (1) 기왕력 = 없다. 있다. 병(년전) 병(년전)
 ① 고혈압, 저혈압 ② 심장병 ③ 당뇨병 ④ 간장병 ⑤ 신장병
- (2) 특이질
 ① 알레르기 ② 약으로 인한-사고 ③ 마약사고 ④ 출혈소인 ⑤ 기 타

환자의 현재상태 및 검사소견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19 년 월 일

환자성명: 이 ○ ○ (인)
 환자주소: 대전시 TEL. 4XX-XXXX
 본 적: 충청남
 보증인성명: 홍 ○ ○
 보증인주소: 서울
 주민등록번호: 17XXXX-1XXXXXX 환자와의 관계: 

* 단,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 신청 날인만으로 유효함



(6) 잘된 동의서 작성실례

백 00

수술(검사·마취)동의서

비밀번호 2000

비밀번호 2000

병명: 비뇨기계 질환
 수술/검사명: 비뇨기계 질환
 주치의(설명 의사): 00 인
 입회간호사: 00 인

본인은 본인(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검사·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검사·마취)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검사·마취)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검사·마취)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기왕력: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당뇨병:
○ 고지혈증:	○ 출혈소인:
○ 심장병:	○ 마약사고:
○ 약으로 인한 사고:	

2003년 2월 10일 시 본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의 부인): 강 00
 주소: 관포시
 보증인: 강 00
 주민등록번호: 68XXXX-2XXXXXX
 주소: 관포시

전화: 3XX-XXXX
 전화: 0X-XXXX-XXXX

* 상기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하며 환자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면 교부할 수 있다.
 * 본 동의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나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거나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대행한다.

대학교 병원 **원본대조필**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수술(검사·마취)동의서

원본대조필

2003년 2월 10일 시 본

환자 또는 대리인(환자의 부인): 강 00
 주소: 관포시
 보증인: 강 00
 주민등록번호: 68XXXX-2XXXXXX
 주소: 관포시

전화: 3XX-XXXX
 전화: 0X-XXXX-XXXX

* 상기 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하며 환자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면 교부할 수 있다.
 * 본 동의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으로 유효하나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지장이 있거나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이를 대행한다.

대학교 병원 **원본대조필**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수술(검사·마취)동의서

(Handwritten notes and diagrams on the right page include a large circle diagram with arrows pointing to various parts, and several boxes containing text like '비밀번호 2000', '수술(검사·마취)동의서', and '원본대조필'. There are also some scribbles and additional text in Korean.)



2. 관련법규

가. 진료기록작성보관의무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나. 의무기록사의 업무범위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7호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2) 의료기사의 직무

- 신규 입원환자 진료기록 관리
- 진료기록 내용검토, 분류편철
- 진료기록검토, 분석, 통계생산
- 질병등 색인, 진료실 녹음녹화테이프 전산기록
- 암등록 통계작성 및 분석업무
- 암환자의 등록대장과 등록카드 작성 보관
- 입원, 퇴원, 사망, 출생, 치료내용 등에 관한 통계수집
- 퇴원환자의 질병코드번호부여, 색인작업
-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기록 수집, 보관
- 의료진에 대한 기록대출
- 미비된 의무기록에 대한 보완관리
- 법원, 수사기관, 국회 등에 진료기록제공



다. 비밀유지의무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의료기사등등은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제1항 3호
: 자격정지 2개월
- 제30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告訴가 있어야 公訴 제기할 수 있다)



(2) 의료법 제19조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위반시 동법제67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형법 제317조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실제사례

가. 보관의무위반사건

(1) 신생아 뒤바뀐 사건(서울지법 94가합101443)

- 1985. 2. 14. 출생(의료법시행규칙상 보존기간 5년)

1990. 1. 9. 보존기간 10년으로 연장

1994. 10. 출산진료기록요구

-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5년 경과 전 개정,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었다'



(2) 원본제출거부사건(춘천지법 원주지원 2000가합573)

- 수술중감염으로 마미총손상 사건

: 사건 직후 환자측과 경찰에 진료기록 사본제출

: 소송중 환자측 신청에 의해 법원의 원본제출명령

: 원본을 병원이전과정에서 분실했다면 제출거부

- ‘환자에 대한 수술 및 치료과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

음에도 진료기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피고

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 피고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다하였고 감

염 후 적절한 치료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병원 관계자들의 과실로 원고가 감염되었고

그 감염부위가 악화되었다고 추인하는 것은 옳다



(3) 기록위변조사건

(가) 서울고법 92나67782

: ‘차트 중 진단명 중 일부가 병원측 사람의 소행으로
흑색볼펜으로 가필되어 원래의 진단명을 식별할 수 없
게 변조된 점(입증방해)에 비추어 보면, 의료과실로 인
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나) 대구지법 94가합27346

: ‘태아심박수측정을 하였으나 정상이었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제소후 원진료기록부에 위 내용을 추가로 기
재해 넣은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3) 간호기록조작사건

with chest c. & r. leg

c/c : coughing, headache

PLS : 2.00. 11. Asthma 경남받고 리호후 리전
없었다 라서 c/c develop 되어 복원
app 통해 입원

PHx : 44년 (94년도)

PHx : 암 (모)

Allergy : 알러지부터 숨길려서 Allergy 생김

V/S : 36.5 온도 30 w/no checked.

Ward orientation was done

meds 0.5L W flural + Amnophyllon 250mg

Mix started. O₂ 3L form inhalation started

Coughing 리호후 dyspnea (+). cyanosis (+)

med pr. notify O₂ Mask. ambubag
applied. Crs. med pr 같이 응급 Care

환자서 ICU 내리자.

transfer from SW (50370) 2 chart, x-ray film
by S-car 2 ambubagging st

sudden dyspnea, BP ↓, pulse ↓ 20 76.5 care 5/18

icu transfer 5/18

NS 500ml IV started. 2 18g angio cath

intubation 18cm. endotube 7.5Fr x 1ea 사용

Ventilator (CMV mode FiO₂ 40% fr 12 TV 530)

started. CPR keep st.

epinephrine 10 (IV) } v/o taken by dr 7/21. 11/21
solumedrol 250 (IV) } 병 원

답 이 _ 이 사망했던 날 중환자실로 실려간 직후에 5병동 간호사실에서 이 _ 선생님이 김 _ 수간호사님과 의논하여 간호기록지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 때 저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고, 그와같이 작성한 간호기록지를 곧 바로 중환자실로 보내주었는데 그 당시 김 _ 선생님이나 김 _ 이 _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말을 맞추자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김 _ 선생님과 김 _ 수간호사님이 저에게 말을 맞추자고 한때는 저와 김 _ 수간호사님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날인 7월 11일 오후 2시나 3시경에 김 _ 수간호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김 _ 선생님이 제가 경찰서에 가기 전에 잠깐 보자고 한다면서 저를 따라오라고 하여 간 곳이 저희 병원 2층에 있는 사용이 폐쇄되어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들어가지 않는 휴게실이었는데 저와 김 _ 수간호사님 그 휴게실로 들어갈때에 그 휴게실 바로 옆에 있는 김 _ 과장님의 진료실에서 김 _ 과장님이 나와 같이 휴게실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서 세 사람이 앉지 않고 서서 그와같이 말을 맞추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맞추자고 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우선 이 _ 을 외출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주사를 놓자마자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주사를 주고



(5) 기재 방법위반사건

- 대법원 1997.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가) 사건개요

- 비호치킨성임파종 환자 A에 대하여 간호사실수로 MTX 45mg 2중 투여, ‘간호사 착오로 MTX 45mg 대신 MTX 90mg 투여되었음’이라고 기록
- 환자 B에 대하여 간호사의 실수로 아드리아마이신 60mg을 5% 포도당 10cc 대신 미톡싼트론 20mg을 5% 포도당 100cc와 투여, ‘아드리아마이신 60mg 대신 미톡싼트론 20mg이 들어갔음’이라고만 기재
- 의료법 제69조 위반기소



(나) 판지

- 무죄선고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량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6) 작성시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가) 사건개요

- 7. 20. 21:00경 간호사의 실수로 수혈사고가 발생,
내과전문의 Y 7. 21. 밤늦게 의무기록지 작성

- 검찰

: 치료즉시(수혈사고직후) 진료기록작성하지 않고,
기재내용도 시간을 정확히 하여 한글 등으로 써야함
에도 부실기재한 의료법 위반죄 기소



(나) 판지

- 무죄선고

: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나. 비밀유지의무

(1) 사례

(가) 국회청문자료요구

- 국회법 제128조(보고, 서류제출요구),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공무상비밀

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 대통령후보 아들에 대한 군면제진료기록자료

: 국무총리후보의 자녀에 관한 진료정보공개청구사건



(나)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사고

- 도로교통법 제74조의 3 제1항

: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 정신질환자 자료요구

: 건보공단:12,800명 통보, 3,000여명 수시적성검사

: 헌법제17조 사생활자유권침해논란



(다) A병원의 암수술통지사건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99조 ① 수사 목적달성 위해 필요한 조사권한 ② 공사단체에 필요사항 보고요구권한'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① 경찰서장은 필요시 공사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조회권한

- 사기로 지명수배중 암수술과 항암치료후 체포

: 구속청구하자 암악화시 책임지라고 함

: 검사가 입회계장을 시켜 의사에게 확인요청

: 개별적으로 더 이상치료 할 필요없다 통보

: 검사와 의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위반 항의



(라) B병원의 정신과진료기록유출사건

- 의료법 제21조 제1항 단서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정신분열증 처를 10년간 같이 치료한 남편이 어느날

요양원에 보낸다며 처의 정신과진료기록복사요구

: 얼마 후 남편이 처에 대한 이혼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

: 장인이 병원에 이의제기



(마) 모 의사의 연예인에 대한 진료내용공개사건

- 형사 유죄(벌금 1,000만원, 의사면허 정지)

‘피고의사는 2001. 6. 1. 18:00경 20여명의 일간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원고가 자신으로부터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면서 일부 진료차트와 수술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여 의사인 피고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원고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범법행위를 하였다.(서울지법 202. 12. 12.선고 2001고단 10277, 2001고단 11168호 판결)



- 민사 6,700만원 배상판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당시 체중감량에 성공하였다는 점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다툼이 있던 중에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의 수술사실을 공개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의사로서의 수술능력을 폄하하고 피고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협하여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술사실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피고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는 바, 피고가 원고의 지방흡입수술 사실을 공개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 등을 참작할 때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2003. 4. 23.선고 2001가합 35391)



나. 비밀유지의무의 목적

(1) 2가지 목적

(가) 환자와의 신뢰구축을 통한 치료효과의 극대화

(나) 공공의 이익보호

- 의사라는 직업인에 대한 신뢰

(2) 소결

- 환자 개인의 이익과 동시에 국민이 의사를 신뢰할 때 사회는 의료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비밀유지할 부작위 의무,

비밀을 바르게 이용해야 할 적극적 작위의무



4. 기본권 충돌

가. 정보보호대상

- 진료의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
 - : 진단명, 치료내용, 내원(입원) 사실 등 일체
- 비밀누설의 방법은 불문
- 의무는 의료인에 한함

나. 해결기준

- 프라이버시보호권(헌법제17조)
 - v. 알권리(헌법제21조)의 충돌



29. 업무상비밀누설금지 의무자 확대

제112조 (업무 상 비밀누설 금지)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112조(업무 상 비밀누설 금지) 의료 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 제8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의료지도원 등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p>



다. 구체적 기준

(1) 피해자승낙시

-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헌법 제36조

- 공공의 이익(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 공공복리)

: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2호 ‘의료인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의무



(3) 상대적 약자

- Tarasoff 사례

- ① 위험한 환자로부터 잠재적 희생자는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평등권에 근거하여 환자와 마찬가지로 보호 받아야 하고 따라서 그 환자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② 의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치료차원에서 맺는 암묵적인 계약이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타인에 대한 危害防止義務에 우선 할 수 없다.
- ③ 의사 등 전문인들은 그 지위에 상응하여 사회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동반하므로 비밀유지의무와 위해방지를 위한 告知義務를 比較較量하여 행하여야 한다.



(4) AIDS산모에 대한 남편고지여부

- 사례 : 출혈산모에 대한 응급CS수술결정

혈액검사결과 AIDS확인

남편에게 수술동의하려자 산모와 산모의 모친반대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금지)

: 국가 등에서 AIDS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사무종사자, 진단·검안 및 간호참여자와 감염자기록 유지·관리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 ① 의사는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AIDS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검진)

-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AIDS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AIDS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AIDS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5. 소송절차에 따른 제한

가. 민사소송법

(1) 제344조 제1항 다호

: ‘제315조제1항 각호(1. 의료인·약사 등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 반대해석시 비밀유지의무있는 문서는 제출의무가 없음



(2)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도 준용

(3) 제286조제1항제1호(증언거절)

: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자가 직무상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
을 거부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제112조(압수수색거절)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149조(증언거절)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알게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문서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1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압수절차), 제219조(비밀유지의무) 규정이 있을 뿐,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의료법개정안

- 제20조

6. 사생활보호규정강화

제20조 (기록 열람 등)

현행	개정안
<p>제20조(기록 열람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0조(기록 열람 등)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환자 본인이 요청한 때</u> 2. <u>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u> 3. <u>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u> 4. <u>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u> 5. 「형사소송법」 제106조나 제215조에 의한 때 6.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때 7. <u>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의한 때</u>



- 제20조 (기록 열람 등)

② 제1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제22조나 제23조에 따른 의무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치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를 요청한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와 함께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6. 건강정보보호법(복지부안)

가.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환경 변화

- IT기술발전으로 건강정보가 대량 입력·처리,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나. 의료 소비자의 변화

-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다. 의료 서비스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 보건의료정보화산업의 국가성장 동력원 지원



제4조 건강기록의 열람 및 정정 ① 생성기관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건강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과 상담기록 등과 같이 본인 및 본인과 타인과의 관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된 경우, 당해 기록에 대한 열람·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본인의 건강기록 중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리인은 당해 생성기관에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록의 열람요청·열람제공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성기관은 본인에 한하여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기록의 교류) ① 생성기관은 다른 생성기관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의 경우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해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대리인
2. 본인의 동의를 얻은 생성기관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당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생성기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 받은 생성기관은 그 사실을 당해 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기록의 제공·수집에 대한 보호조치) ① 생성기관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전염병예방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모자보건법, 결핵예방법,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공목적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분을 발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외부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하여 가공·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수집의 범위, 가공·이용절차, 보유기간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본인 및 당해 생성기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동의 철회권)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록의 제공·수집에 동의한 본인 또는 생성기관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8조(통계·연구목적 등에 대한 보호조치) ① 외부에서 통계·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하여 가공·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수집 범위, 가공·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생성기관 또는 취급기관에 고지하고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건강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1 조 (건강기록의 보호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조치가 포함된 건강기록 보호지침을 고시할 수 있으며,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건강정보보호 수준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의 건강정보보호 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7. 마치며

-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의 절대적 보장
- 프라이버시권
- 치료목적에서 적극적 활용
- 알권리보장과 조화

감사합니다.

변호사 법학박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Shin & Partners

| 부설 | 의료법률정보센터

Shin@shinlaw.net